



JANUARY 2022 | ISSUE 1

SHIN & YOO NEWSLETTER

The Newsletter for Shin & Yoo's Legacy Clients



LEGAL UPDATES: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

Article by 신&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진욱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재해를 낸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올해 1. 27. 시행을 앞두고 있다(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시행).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담고 있어 산업안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등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위 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관투자자들은 EHS(환경, 건강, 산업안전)의 위험도가 큰 회사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투자를 철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조항이 있었으나,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하여 수범자의 범위도 넓고 보호대상도 확대될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높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처벌 일변도의 제도 개혁은 산업안전체계의 효과적 구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처벌대상 및 처벌 수위의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외에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처벌 일변도의 제도 개혁은 산업안전체계의 효과적 구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쉬운 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이 오로지 처벌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아쉽지만,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기업으로 하여금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는 것보다 산업안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적 지원은 현저히 부족하고 기업이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재정적 책임만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적지 않다.

현행 손해배상제도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시키는데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진일보한 법률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실무에서 배상액 인정에 있어 유독 인색한 국내 법원이 실제 5배의 징벌적 배상판결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지울 수 없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점을 논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조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업자를 위한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설을 하고자 한다.

“

만약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

“

처벌대상의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외에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어디까지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실제 법률 해석과 적용에 관한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시민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일정 이상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한다. 가슴기 살균제 참사 등과 같은 제조물 하자로 인한 다수 피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단소송제, 배심제와 징벌적 배상제의 확대 없이 이 개념만을 도입한 것은 그다지 실효적인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과 발생과의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문제는 여전히 소송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한정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2019. 1. 15. 개정 이후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한 장소(위험장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넘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까지 확장하고 있다. 기업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소 모호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가 이루어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노동부는 2020. 3. 배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 1. 16.)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수급인 자신의 작업장소 또는 수급인이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이라고 보고 있는 점을 참조할 만하다.

“

보호대상의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물론, “여러 차례의 도급이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그와 근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반드시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보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및 형사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지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2021. 10. 5.자로 대통령령은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등의 의무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조치와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이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그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기존 범죄와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이 가장 높으므로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만이 직접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만, 법인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대재해발생시 위 단서 규정을 근거로 면책되는 사례는 예외적일 것으로 보인다.

구분	처벌대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병과 가능)	법인(양벌 규정)	
중대 산업 재해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시 (법 제6조 제1항)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50억 원 이하 벌금
	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②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 시민 재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50억 원 이하 벌금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10명 이상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기업과 사업자의 대응전략

중대재해처벌법은 한층 강화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기업과 사업주의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안전 및 보건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은 전체 예산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 비용 절감을 위하여 산업안전을 게을리한다면 사후에 기업의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

기업들은 아무리 작은 산업안전사고라 할지라도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 및 처리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보관하되,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업무팀에서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나 팀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가 축적될수록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평가되어 면책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 정도를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산업안전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일정을 구축하고 점검기록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책임자 등이 상시적인 산업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면 대표이사 등의 경영책임자가 면책될 여지가 있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하에서는 대표이사 등의 경영책임자가 더 이상 이를 안전보건담당자에게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기업에 비하여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그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졌다.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경영에 전념하기에 시간도 부족한데, 이 모든 것을 챙기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고 기존의 관행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그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안전보건담당 임원을 별도로 두어 대표이사에 준하여 산업안전체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일종의 재무이사가 별도로 있는 것과 유사하게 보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항상 산업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완전히 무결한 산업안전체계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만약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여 그 피해를 선제적으로 배상하고, 확대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있어 최대한의 감형과 배상액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피해를 숨기고 배상을 지연하여 그 피해자들을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는 전략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있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번 사건들을 대하면서 아쉬운 점은 법률전문가들과 초기대응으로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도, 피해 은닉과 회피로 일관하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 칼럼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사업자들에 대한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신&유 법률사무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
우리기술빌딩 11층
T. 02-6323-6220
F. 02-6323-6223
E. host@shinyoo.co.kr
W. www.shinyoo.co.kr

신진욱 대표변호사(jwshin@shinyoo.co.kr)